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달청장 직권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근거마련 등〉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87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조달청장 직권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근거마련 등 (안 제21조제1항 및 제35조, 안 제21조의2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20.

다.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조달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나 방문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계약상대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거래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 규정이 없으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달업체의 불공정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고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사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

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조달청장 직권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근거마련 등 (안 제21조제1항 및 제35조, 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21①) -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u>신고내용 조사</u>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무소 등을 방문해 시설·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없이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 <신설>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5) - <신설> - <신설>	○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근거 마련 (§21①) -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u>신고내용 조사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또는 사무소 등을 방문해 시설·서류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1. ~ 6. (현행과 같음) ○ <u>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 금지의무 신설 등 (§21의 2)</u>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u>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u> - <u>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u>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1조제1항1)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제1호),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제2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제3호),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품을 납품하는 행위(제4호),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제5호),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달행위에 대해 불공정 조달행위라는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공장 시설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 조달행위에 여러 업체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있더라도 신고된 특정업체만 조사가 가능하고 타 업체로의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거래정지²⁾를 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워 조사의 실효성을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됨.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2조(거래정지) ① 조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세부 품명 또는 품목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거래정지)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참고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불공정 조달행위는 2020년 185건, 2021년 160건, 2022년 135건, 2023년 189건, 2024년 259건으로 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사업체수 대비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되는 적발율이 연도별로 29.9%에서 최대 76.7%에 이르는 등 편차가 크고, 최근 5년 평균적으로는 적발율이 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행 규정의 신고에 따른 조사방식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전면적으로 포착하여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현황>

유형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신고건수	185	160	135	189	259
조사건수	78	81	51	66	74
조사업체수 (A)	100	378	130	103	114
적발업체수 (B)	48	113	72	79	77
적발율(%) (B/A)	48.0	29.9	55.4	76.7	67.5

* 단순 민원, 계약 미완료건 등은 조사대상 제외

** 자료: 조달청

개정안에 따른 경우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수요기관도 계약상 대자 등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

여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과 생명,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하고 있는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확대와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업체의 경우 조사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령에 직권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정부의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로 규정³⁾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복수의결권

둘째, 개정안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면 조사를 통해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자체 수요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와 공무원의 위법행위 등을 조사·감독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 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사·감독권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정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 내용 조사 또는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있는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과 유사 입법례⁴⁾의 경

주식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우 과태료 부과수준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규정한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과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과태료) ⑥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제35조(과태료) <신설>	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문의처
02)6788-5160